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18 선고 2019가합5017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
담당변호사 손병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서
변론 종결 2020. 3. 6.
판결 선고 2020. 3.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795,92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5,795,923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5. 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원고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인출의 근거를 만든 후, 2002. 5. 1.경부터 2013.12. 31.경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2,055,795,923원을 송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 5. 22.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동일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2015. 9. 24. 피고와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횡령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15.7. 2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경북 청송군 C, 안동시 D, 구미시 E, 울릉군 F 및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아래에 표시된 피고와 원고 간의 대물변제계약에 의해 발생한 피고의 채무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2조에 표시된 목적물을 원고에게 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대물변제액: 2,055,795,923원

나. 피고 관련 원천징수세에 대한 원고의 대납액: 253,262,630원

다. 대물변제총액: 2,309,058,553원

제4조(채무의 소멸) 피고와 원고가 전조에 의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완료한 때에 제1조에 기재된 피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양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최소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고, 평균 감정총액으로 본 계약 제1조 대물변제총액과 상계 처리한다. 단, 양도 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대출 등 금액은 감정평가액에서 제외한다.

다. 원고는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45379)을 받았고, 2015. 8. 17.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라.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대한민국이 2015. 8. 5. 피고에 대한 2,000억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대상 부동산을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7755)하여, 더 이상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무를 이행할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돌연 2015. 9. 13.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및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자금을 가져갈 목적으로 원고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2,055,795,923원을 송금 받아 횡령하였고, 형사재판에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의 유죄가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선택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불법적으로 체결된 무효의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금액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체결된 2015. 7. 26.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55,795,923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자금 2,055,795,923원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2015. 7. 26. 이 사건 형사판결에 서 인정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이 무렵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준비서면이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0. 1. 제출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준비서면 제출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5. 8. 17.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그 선택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되,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는 다른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1. 3. 23. 선고2001다61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피고 소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별개의 채권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 사건 가처분으로써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도 중단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2015. 9. 13. 합의해제로 소멸하여 이 사건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역시 소멸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가처분은 사정변경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때부터는 더 이상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가처분으로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2015.9. 13.부터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9. 10. 1.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선택적으로 추가한 준비서면이 제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4.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의 효력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그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112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 제3자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유죄로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1102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대주주이자 원고 등 계열사를 총괄 경영하는 H의 장남으로 원고에 대하여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H와 공모하여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I, J에게 피고 명의로 출원된 'K' 등 상표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한 점, 이에 따라 피고가 출원한 상표 등은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브랜드가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사용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에게 회사의 자금을 인출해 줄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피고와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2,055,795,923원의 거액을 송금 받아 횡령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판결이 확정된 점,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이 효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가 수령한 위 돈은 횡령금이라고 할 수 없어 확정된 형사 판결과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당시 피고의 지시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원고 대표이사에게 요구하여 횡령의 수단인 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대표이사의 횡령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을 넘어 이를 주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인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아부당이득한 2,055,795,9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9. 8.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3.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신윤주, 판사 백현민